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합36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노재훈

변론 종결2024. 8. 2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피고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1,0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1) E 채무금 및 F 접대비 관련 2,000만 원
- 2) E 대출금 G 지급액 8억 원
- 3) H(I) 가등기 3억 원 중 미지급금 1억 원
- 4) J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 5) 위 본안소송 관련 비용 3,000만 원
- 6) K저축은행 관련 금액 2,000만 원
- 7) L 변호사 비용 3,000만 원
- 8) M 전답 관련 대출금 2,000만 원
- 9) N 목사 전답 대출 관련 2,000만 원

나. 또한 D는 2013. 11. 13.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4. 2. 말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D는 2022. 4. 11. 위 가, 나항 기재 채권 중 가의 3)항을 제외한 나머지 1,0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22. 11. 15.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21. 11. 3. 소외 O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5,985,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D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1. 가. 3)항을 제외한 나머지 1,0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C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데,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채권자이고,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피고 C 피고 C은 2019년부터 2021년경까지 주식회사 P에서 일하며 매월 약 4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연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을 올렸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 25,985,000원은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8. 5. 21. 미국 Q, KENNESAW, GA R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국 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 952,000달러에 매입하였다가 2021. 2. 26. 미화 1,075,000달러에 매각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지상 건물 건축비용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지상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B의 무자력 이 법원의 영통구청, 천안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2년도 기준 과세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고,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을 체납한 사실,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던 E 주식회사의 주식 2,500주를 D에게 양도한 사실, 그 밖에 피고 B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회사들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된株式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명의신탁 여부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며 2019년 50,139,210원, 2020년 50,321,010원, 2021년 50,339,760원의 순수입을 얻은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나머지 잔금 25,985,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 C이 2018. 5. 2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미국 부동산을 미화 952,000달러에 매수하였다가 2021. 2. 26. 위 부동산을 미화 1,075,000달러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7 내지 20호증, 을나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을나 제2호증)에 기재된 매수인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는 고소장(갑 제7호증 제1쪽)에 피고 B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것과 같은 사실, 이 사건 미국 부동산의 매수자 연락처는 "(이메일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나 제5호증 제12쪽 참조),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50% 주주로서 E 주식회사와 관련한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2. 3. 26.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S으로부터 3,375,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던 사실, 피고 B는 2017. 9. 21.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2. 2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후임 대표이사는 피고 B의 동서인 U이고, U는 피고 B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17. 9. 27. 주식회사 V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2. 2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후임 대표이사는 피고 B의 동서인 U이고, U는 피고 B와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022. 1. 7. 주식회사 P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전임 사내이사는 피고 B의 처제인 W이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전화번호와 이 사건 미국 부동산

거래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는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이 얻은 근로수입만으로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데에 반하여 피고 B는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는 여러 개의 법인을 처제, 동서 등의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신축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국 부동산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B로 보이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명의신탁 해지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C이 2022. 6. 3. 이를 송달받은 사실, 이 사건 2023.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C이 2023. 7. 25. 이를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5)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선

판사조민혜

판사송인석

별지